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61 2014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2년 9월 27일, 조규영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0월 2일

다. 상 정 일 자: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2년 11월 23일 상정 · 질의답변)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규영 의원)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한국 사회복지의 지속적 발전에 기 여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서울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로 하였으며,

-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보수수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셋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어 시의원, 공무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 넷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 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동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 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시장의 책무 관련 (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 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근 거한 것으로, 사회복지 종사자가 높은 이직과 사기저하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고객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정부에서도 2015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이상 되도록 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4년까지 공무원 보수 대비 95%이상 달성할 것

을 발표함.

- 그리고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제 정(2011년 3월)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복지사 등 시설 종자사 처우개선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하여 종사자의 처 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고, 실태 조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봄.

(4) 종합계획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과 전문직으로서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장에게 그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것으로 보임.

(5) 처우개선 등 사업 관련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 이는 인건비 등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됨.
- (6) 수정 또는 보안의 여지가 있는 사항
 - 조례안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맞게 일부 자구수 정이 필요함.
 - 제1조 본문중"「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으로 위한 법률」" 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수정 하며,
 - 제2조 제3호중 "제2조"를 "제2조 각 호"로 수정하며,
 - 제2조 제4호중,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정하며,
 - 제5조 제4항중 "출서"를 "출석"으로 수정하며,
 - 제5조 제5호중 "규칙"을 "운영규정"로 수정하며.
 - 제6조 제1항중 "않아야 한다"를 "아니 한다"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함.
 -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 에 관한 계획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제2항중 "전문기관이난"을 "전문기관이나"로 수정이 필요함.

(7) 종합 의견

-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 으로 보이나,
 - 종합계획(안 제7조)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특정 업계 종사자를 위한 계획으로 시민 전체의 정서에 반할 여지가 있고, 다른 유사 직종(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등 다른 자격증 소지자들과의 형평성 시비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었듯이, 청소년 시설이나 의료시설, 여성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음. 적용범위에 대한 견해를 답변바람.

○ 답변 : 조례안에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되어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런 시설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것은 개별 시설별로 판단해야 함.

○ 질의 : 주요 쟁점은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 지사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가 문제임.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이 포함되는지 답변 바람.

○ 답변 :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 이유

○ 시장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5조).
- 종합계획에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 호 1061

제 안 년월일 : 2014년 2월 2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시장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5조).

나. 종합계획에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나.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으로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로 한다.
- 안 제2조 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 각 호"로 하며, 같은조 제4호 중,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안 제5조 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출서한"을 "출석한"으로 한다.
- 안 제6조 제1항 중 "않아야 한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

과 목표

-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8조 제1항 중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며, "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전문기관이<u>난</u>"을 "전문기관이<u>나</u>"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으로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증진에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4 <u>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u> 금액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 5. (생략)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1 5. (원안과 같음) ③시의원 ④

원 안	수 정 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사회복지	⑤ (원안과 같음)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	
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아니 한다.
② (생략)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원안과 같음)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안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②
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
2.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	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대한 계획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
한 계획	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1)
제8조(실태조사)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	~~~~~~~~~~~~~~~~~~~~~~~~~~~~~~~~~~~~~
우 개선을 위하여 <u>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u>	실시하
<u> 3년마다</u>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u>하도록 하</u>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②
전문기관 <u>이난</u>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u>이나</u>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다.
-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4. "보수" 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중사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등 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 2.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 4.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으	향상을
로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	
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	
담공무원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하는 등 처	
우 및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	
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제2조(정의)
은 다음과 같다.	
1 2.(생략)	1 2. (원안과 같음)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3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u>제2조에</u>	제2조 각 호
<u>따른</u>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_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u>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u> 을	4
말한다.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금액 제5조(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	
상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	
여 사회복지사등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u>둔다.</u>	<u>둘 수 있다.</u>
1 5. (생략)	1 5. (원안과 같음)
③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 의	③ <u>시의원</u>
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사회복지사 등 종사	
자, 사회복지기관관계 인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서한 위원에 대하여는	④ <u>출석한</u>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원 안	수 정 안
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5) (생략)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사회복지	⑤ (원안과 같음)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	
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u>않아야 한다.</u>	<u>아니 한다.</u>
② (생략)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원안과 같음)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안과 같음)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②
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1. 시의 사회복지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
2.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 복지전담 공무원 보	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 복지전담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대한 계획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
한 계획	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	제8조(실태조사) ①
우 개선을 위하여 <u>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u>	<u>3년마다</u>
<u>3년마다</u>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u>하도록 하</u>	<u>실시하</u> 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o rf
전문기관 <u>이난</u>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생략)	③ (원안과 같음)